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6. 24.(월) / 총 3매
담당 부서 / 주거복지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좌명한, 주무관 장휘랑 • ☎ (044) 201-4504, 4506, 4868
보 도 일 시	2019년 6월 2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24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

- 지원대상 확대, 입주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,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**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* 업무처리지침」 개정안**을 마련하여 **행정예고**(6.25~7.15) 한다고 밝혔다.
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·고시원·비닐하우스 등 **비주택 거주자**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**범죄피해자**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

* (지원내용) 매입·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/ 보증금 50만원, 임대료 시세 30%

- 이번 개정으로 **아동빈곤가구, 가정폭력피해자, 출산예정 미혼모**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.

[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]

❶ 입주대상 확대 :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등

- (**개선전**)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○○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·딸과 거주중.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,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.

⇒ (**개선후**)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, 시세 30%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

❷ 입주절차 간소화 : 수급자 소득·자산 검증 생략

- (**개선전**)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·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.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·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

⇒ (**개선후**)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·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

□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

○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·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.

○ 첫째,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**최저주거 기준**에 **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**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,

- **좁은 공간에서 부모·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**하는 취약계층 **아동**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.

  * 예시) 3인 가구의 경우(부모 2人, 아동 1人),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·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입주 가능

○ 아울러, **가정폭력피해자,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**이 **필요**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.

❷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

○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**자격심사**와 **서류제출**을 **간소화** 한다.

- 첫째, **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**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**소득·자산 검증** 및 **심사 절차**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**수급자격 증빙 서류**만으로 **대체**할 수 있도록 한다.

- 둘째,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**자활계획서**를 **폐지**한다.

○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**기존 최장 3개월**에서 **7일 이내로 대폭 단축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"이번 개정으로 **성장기 정서발달, 학습** 등이 **중요**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**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**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**취약계층**이 **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**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면서,

○ "이번 지원방안이 **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**(6.21)를 통해 오랫동안 **주거복지 현장**에서 힘써온 분들의 **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**를 통해 마련된 만큼,

-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, 전문가,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"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"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, 전화 : 044-201-4868, 팩스 044-201-5531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장휘랑 주무관(☎ 044-201-48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